제14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공동선언문

’21.12.21

(화상회의)

2021년 12월 21일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일본의 보건장관은 제14차 한중일 보건장관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는 한중일 3국의 공동 도전과제인 코로나19 등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대응을 위한 3국 간 활동/노력의 필요성과 감염병 대유행이 국민의 건강, 생활, 안전 및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감염병 대비와 대응, 건강한 노년과 비전염성 질환, 그리고 보편적의료보장(UHC)을 회의의 의제로 논의하였다.

1. 팬데믹을 초래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 대비 및 대응 또는 높은 중요성을 지닐 잠재적 공통 관심 분야의 정보 및 경험 공유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재확인하였듯이, 감염병은 우리 지역에 초국경 위협이 될 잠재력이 있다. 한중일 3국의 지리적 접근성과 국경이동 및 운송의 빈도를 고려하였을 때, 지역 차원에서 감염병 대유행에 협력적으로 더욱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한중일 3국은 ‘신종인플루엔자 공동대응을 위한 한중일 협력각서(MoC)’와 ‘신종인플루엔자 및 주요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공동행동계획(2019년도에 개정)’에 기반하여 각국의 공중보건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신종인플루엔자(A/H1N1)와 메르스(MERS)와 같은 글로벌보건위기 관리를 위하여 협력해 나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제하고 3국이 더욱 견실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제기구 및 다양한 국가들과

필수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다양한 단체와 패널로부터 제시되었듯이, 우리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에 주력하는 견고한 보건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협력적인 바이러스 관리에 초점을 둔 예방, 통제, 감시 및 대응방안에 대한 개방적이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시의적절한 정보공유에 동의한다. 우리는 또한, 팬데믹 발생 전후에 각 국가 상황과 일관성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및 미래 신종 감염병 대유행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 심포지엄', '한중일 예방접종 후 코로나19 관리 공동심포지엄' 그리고 인력 강화 및 역량 증진을 위한 전문가 및 공직자 간 소통과 교환 등을 통해 우리는 정보 및 지식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협력하여 연구에 임하고 공동행동계획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글로벌보건구조(global health architecture)에 대하여, 우리는 팬데믹을 포함한 글로벌보건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세계보건기구(WHO)를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다.

WHO 긴급보건사태 대비대응 강화를 위한 워킹그룹(Member States Working Group on Strengthening WHO Preparedness and Response)은 팬데믹 대비 및 대응을 위한 WHO 조약, 협정 또는 기타 글로벌 수단 등 새로운 수단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워킹그룹은 또한, 국제보건규칙(IHR)을 강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글로벌보건위기에 예방, 대비 및 대응하기 위하여 본 논의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WHO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활동 및 목표를 준수하고 코로나19 팬데믹 관리를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이행하여 글로벌보건을 위한 협력을 도모할 것이다. 우리는 동시에 역내 보건위기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및 아태지역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국내법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고, 역내 공중보건 위기를 감시하고 감염병으로 인해 발발되는 모든 보건위기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팬데믹을 통해 진단기기,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불평등한 글로벌 접근성은 팬데믹 장기화하고 건강 및 경제 손실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다른 국가, 특히 중저소득국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용적인 노력과 지원을 계속하고, 의약품 및 백신 개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와 같은 글로벌 체제와 협력하여 중저소득국가의 공평한 백신 접근 보장에 이바지할 것이다.

2. 건강한 노년 및 비전염성 질환

WHO 서태평양 지역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일부이며 중국은 65세를 초과한 고령자의 인구가 1억 9000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령 인구를 보유한 국가이다. 또한, 한중일 3국에서 출산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압박을 받는 3국에서 인구구조변화는 시급히 다루어야 하는 문제이다. 3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하락하는 출산율과 인구 고령화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현 과제 및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회적 상황과 개인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중장기적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올해 한중일 3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세미나가 개최된 것처럼, 3국은 해당 분야에서 정보 및 지식공유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어 이와 같은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사는 만큼 우리는 한중일 3국 고령인구의 필요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연령친화적 환경 조성, 디지털 시대의 고령인구 권리 및 요구, 고령인구의 사회적 참여 증진과 고령인구를 위한 보건 의료서비스 그리고 통합된 의료 및 사회 복지 보호, 그리고 공동과학연구 마련을 위한 과학연구소 지원 등을 포함한 공통관심 분야에서 정보공유, 인력양성 및 협력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고령화 인구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한중일 3국의 공통관심 분야인 정보 및 경험 공유, 인력양성 및 협력활동 강화를 제안한다. 3국 내에서는 단순히 기대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한 사안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치매는 초기 대응과 예방 노년, 건강한 노년을 이루기 위한 간병 및 의료서비스 등을 포함한 다분야 정책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며 3국 간에 진행 중인 노력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3국의 고령인구는 치매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의료자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비전염성 질환 또한 흔하게 겪고 있다. 비전염성질환으로 인해 보건분야 정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만성질환의 1차 및 2차 예방방안에 주력하는 통합된 수단을 추진하고, 건강한 식단, 운동, 금연, 조기예방을 위한 검사 등을 권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한중일 3국은 더 많은 국민과 고령인구가 삶을 즐길 수 있도록 건강한 노년을 촉진하고, 모범사례, 역학적 및 과학적 근거, 경험 그리고 연구를 공유하기 위하여 비전염성 질환의 예방 및 조기치료 협력활동을 도모할 것이다.

3. UHC 달성 및 강화

UHC 달성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이며 WHO 13차

중장기 사업계획서의 우선 과제이다. 또한, UHC 촉진을 위해 보건체계를 강화하면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목도하였듯이 감염병, 비전염성질환, 고령화 등 보건문제에 대한 대비를 개선할 수 있다. 우리는 인구구조 및 경제여건의 변화하는 환경에서 복원력 있는 보건체계가 갖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UHC 달성을 위한 지원 마련에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UN UHC 고위급회의가 2023년에 개최될 것으로 예정된 만큼, 한중일 3국은 회담을 위한 정치적 분위기 증진을 도모하고, 유의미하며 포괄적인 정치적 선언문을 채택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자연재해가 한중일 3국의 국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극심한 위협 및 문제를 야기하였다. 재해상황에서는 고령인구, 여성, 아동 및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건강 및 생활에 더 많은 타격을 입는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에게 시의성 있고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보건체계 유지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우리는 보건위기 관리에 대한 한중일 3국의 경험을 공유하기로 한다.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UHC 달성 노력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빠르게 회복하는 복원력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을 시인한다. 3국은 WHO 서태평양 사무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재난관련 보건위기 대응에 대한 지식 및 전문성을 공유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4. 다음 회의

우리는 3국 보건장관회의가 3국 협력사무국(TCS)의 협력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모든 활동은 평등, 상호주의 및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 시행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차기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2022년 한국에서 개최될 것이다.

대유행을 초래하거나 높은 중요성을 지닐 잠재적 공통 관심 감염병 대비 및 대응에 관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일본 후생노동성 간 공동행동계획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일본 후생노동성(이하 “당사자”)은

2021년 12월 21일 제14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제14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공동선언문에 기반하여,

대유행을 초래하거나 높은 중요성을 지닐 잠재적 공통 관심 감염병 대비를 위한 3국 공동 노력의 필요성과 이와 같은 질병 발생으로 인한 3국 국민의 건강 및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공동행동계획에 합의하였다.

1. □ □ □ (Contact Point)

1-1. 당사자는 다음 기관을 정보공유채널로 지정하여 대유행을 초래하거나 높은 중요성을 지닐 잠재적 공통 관심 감염병과 관련하여 평상시나 위기상황시 상호연락을 위한 연락책으로 활용한다.

-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 질병관리청 국제협력담당관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제협력국
- 일본: 후생노동성 결핵.감염병 통제과/ 후생노동성 국제협력국

1-2. 당사자는 오디오 또는 비디오 컨퍼런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메일 등의 기타 방법을 활용하여 정보공유를 활성화한다.

1-3. 각 당사자는 연락책이 변경되었을 때 즉시 그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공유한다.

2. 정보, □□ □ □□ □□

2-1. 자국에서 대유행을 초래하거나 높은 중요성을 지닐 잠재적 공통 관심 감염병이 발생한 국가는 각국의 법과 제도에 따라 나머지 두 국가에 다음의 정보, 증거, 지식을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대유행의 모든 국면 동안 공유한다.

- 역학적 정보
- 임상적 관리, 치료 관행 및 프로토콜
- 바이러스학적, 실험실 정보
- 임상 환경에서의 감염병 통제 조치
- 공공 보건 및 사회적 조치
- 기타 과학적 대응

2-2. 당사자는 정보 및 지식 공유와 긴밀한 소통에 대한 협력을 통해서 역량강화 증진을 위해 필요시 전문가 및 공직인사를 교환한다.

3. □□□□□□□ □□□□□□

당사자는 대유행을 초래하거나 높은 중요성을 지닐 잠재적 공통 관심 감

염병 발생시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3국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위한 당사자 보건장관 명의의 공동성명서 개발 고려

▪ 적기에 정확한 정보공개와 국내외 언론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감염병에 대한 신속, 투명, 정확한 정보 제공 방법에 대한 경험 교환

▪ 한·중·일 국제보건규약 국가담당관을 통해 3국 위기대응 신속하고 긴밀한 의사소통 절차 마련

4. 백신, 진단, 치료제와 같은 의학적 대응책의 연구 및 개발을 포함한 과학적 준비와 대응

당사자는 대유행을 초래하거나 높은 중요성을 지닐 잠재적 공통 관심 감염병의 백신, 진단, 치료제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

5. 협력의 확대

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대유행을 초래하거나 높은 중요성을 지닐 잠재적 공통 관심 감염병 대비, 예방 및 대응 조치, 그리고 인적 역량 구축안 수립과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3국간 합의에 따라 대유행을 초래하거나 높은 중요성을 지닐 잠재적 공통 관심 감염병 대비 공동위험평가 및 공동훈련 수행

▪ 협력 범위의 확대를 위해 다른 아시아 국가를 초청한 국제 세미나, 국제 심포지엄 혹은 WHO 지원을 받는 훈련 등 국제 공동도상훈련 및/또는 사후평가 실시

6. 조건

6-1. 본 공동행동계획은 당사자 각국의 법과 규정에 의거한 가용 인력 및 자원, 예산에 따라 수행된다.

6-2. 본 공동행동계획의 해석 혹은 이행 시 당사자 간 발생하는 모든 쟁점은 당사자 간 협의와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한다.

7. 개정 □ □□

7-1. 본 공동행동계획에 기반한 협력은 당사자의 서명일에 시작되어 5년간 유효하다. 당사자는 매 3년마다 본 공동행동계획의 갱신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7-2. 본 공동행동계획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본 공동행동계획의 효력은 협력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다른 국가에 서면으로 협력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종료된다.